

필수서 정오표

144쪽

- ⑦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의무자는 (~~甲~~_乙)이고, 등기관리자는 (~~乙~~_甲)이다.

156쪽 상단,

② 직권말소여부(용익권설정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용익권설정의 가등기		
중간등기	• 용익권설정등기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직권말소○
	• 처분제한등기 (가압류 · 가처분 · 경매개시결정) 삭제	
	• 저당권설정등기	직권말소×
• 처분제한등기 (가압류 · 가처분 · 경매개시결정)		
용익권설정의 본등기		

156쪽 하단

📖 확인학습

- ① 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 ② 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
- ③ ~~저당권~~ 용익권설정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 용익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처분제한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

173쪽 하단

📖 정답

- ⑦ (~~甲~~_乙), (~~乙~~_甲)

178쪽

② 용익권

용익권설정의 가등기		
중간등기	• 용익권설정등기 • 처분제한등기 삭제	직권말소○
	• 저당권설정등기 • 처분제한등기	직권말소×
용익권설정의 본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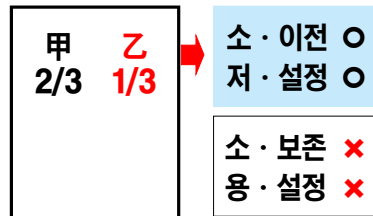
필수서 159쪽 전체를 아래 표로 교체

보충 학습 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등기 - 직권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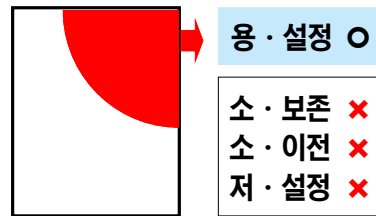
1. 등기 능력 없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 관공서·법원의 촉탁(가압류·가처분·경매)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관련 예규 및 판례

① 공유지분



② 부동산의 일부



- ③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 ④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다.
- ⑤ 하천에 대한 용익권은 등기할 수 없다.
- ⑥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는 등기할 수 없다.
- ⑦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는 등기할 수 없다.

2025 익힘장(정답) 정오표 (박윤모)

06쪽

【테마07】 말소등기

- ⑦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의무자는 (甲)이고, 등기권리자는 (乙)이다.